「연소기에 부착된 과열치단장치」 시설검사 착안시항

과열차단장치*가 부착된 튀김솥 검사에 대한 주요 검사착안사항을 안내하여 민원업무에 대응하고 원활한 검사업무처리를 유도하고자 함 * 튀김솥에 온도센서·제어부·차단부를 설치하여, 일정온도 이상에서 가스를 차단·경보하는 장치

1. 일반현황

- LPG사용시설 등에 과열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사례* 발생
 - * 군부대 식당 및 대형마트 푸드코트에 설치되어 자동소화장치. 과열방지장치 등으로 지칭됨



- ① 제 어 부 : 온도 표시(가스농도 아님) ② 차 단 부 : 설정온도 이상에서 가스차단
- ③ 온도센서 : 튀김솥 또는 배기후드에 설치되어 온도 감지

2. 관련기준

- Ⅱ 튀김솥의 변경설계검사 대상 여부
 - (변경설계검사 대상) 연소기 제조자 외에 해당하는 자가 튀김솥 등 연소기의 안전장치로서 과열차단장치를 내장 설치하거나 분리가 되지 않는 구조로 부착
 - (변경설계검사 비대상) 과열차단장치를 튀김솥 등과 별개로 ① 외부에 설치 ② 이동 부착이 가능 ③ 독립된 전원을 가지는 구조로 부착
 - ※ 차단부는 배관밸브에 설치되어 연소기 제품이 아님

② 과열차단장치 검사품(인증품) 여부

- 튀김솥에 설치되는 과열차단장치는 **가스용품 또는 공사 인증품 대상이 아님**
 -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*에 사용되는 차단부, 제어부 등을 과열차단 장치에 사용하여도 가스용품 또는 공사 인증품에 해당하지 않음
 - *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는 검지부, 제어부 및 차단부 1SET로 KGS AA632에 따라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검사를 실시함
 - ※「액법」제40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은 개조할 수 없음

③ 전기설비 이격거리 적정여부

- 사용시설 코드기준에 따라 **과열차단장치**에 사용된 **전선**은 절연조치 여부에 따라 **배관이음부와 10cm 또는 15cm이상 거리를 유지**해야 하나, 배관에 설치되는 과열차단장치의 차단부는 이격거리 미유지
 - ※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동 코드에서 적용 제외

3. 검사착안사항

- (검사처리) 과열차단장치 철거여부에 따라 검사 처리
 - 1안) 사용자가 과열차단장치를 철거 적합 처리
 - 2안) 사용자가 과열차단장치를 사용 다음 3가지 모두 충족시만 적합처리
 - ① 과열차단장치가 변경설계검사 비대상
 - ② 차단부를 제거하여 과열경보기능(사용자의 자체안전장치)으로 사용
 - ③ 과열차단장치에 사용된 전선이 전기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적정

4. 행정사항

- (검사원) 2안)으로 검사시, 위해조치 개선권고 사항에 아래의 문구를 기입 및 사용자 서명 날인 <첨부 1 참고>
 - " 귀하가 기스시설에 설치한 과열경보기능의 장치는 기스안전공사의 검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, 동 장치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림"
- 검사원 교육(액·도법 사용시설) 및 시공자·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·안내

첨 부 : 위해조치 개선권고 작성 예시 1부. 끝.

〈첨부1〉위해조치 개선권고 작성 예시

가스시설 검사 『부적합・경미 지적사항・위해 유인 개선권고』 통지서

① 상 호	한국가스안전공사	⑤ 검사(시설)구분 ##사용시석
② 성 명(대표자)	아 무 개	⑥ 검사년월일 2015. 12. 1
③ 사업소 소재지	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호	(전한 : 043 -750- 1234)
④ 검 사 원 성 명	긴 안 전	⑦ 재 검 사 기 한

부적합·경미지적·위해 & 인개선권고 내용				
⑧ 부적합 등 항목	⑨ 필요 조치사항	⑩ 미조치시 위험요소		
(위해요인 개선권고)				
ㅇ 귀하가 가스시석에 석치한 라				
역경보기능의 장치는 가스안전				
공사의 건사법위에 속하지 않				
으며, 동 장치의 유지 덫 란너				
책인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려				
드십				
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6조 · 제16조의2 · 제17조 제18조 제20조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, 제36조 · 제37조 · 제39조 · 제40조 · 제44조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5조 및 제17조,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5조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 제32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하오니. 부적합인 경 우 재검사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개선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경미 지적사항 및 위해요인 개선권고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2월 1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이 이 지역본부장(지사장)

업소 수령 확인 : 아무개 (서명 또는 📵)

[비고] 1) 재검사 신정시 수수료 유	・누
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- □ 재검사 수수료 면제대상(년 월 일까지 신청시에만 면제)
- □ 재검사 수수료 납부대상(금액: 원, 부가세 포함)

- 온라인 입금번호 : 은행

2) 재검사 신청창구

□ 전화 : , FAX:

3) 공급자 : (전화:)

4) 본 검사와 관련한 이의제기는 www.kgs.or.kr을 이용하여 주시거나, 대표번호 1544-4500 (해당 지역본부·지사)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